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관한 2014. 9. 18.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8.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0가합112450, 2010가합112481).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판례법리를 확인하면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컨베이어벨트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 배치된 경우(종래 판결 사안의 ‘의장공정’)로 좁히지 아니하고 원청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공정 중에서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1.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이유

① **계약의 내용**: 현대차(또는 현대글로벌비스)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목적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기성금이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점에서 계약의 목적이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일부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현대글로벌비스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대차의 생산관리 및 출고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현대차의 직접적인 불법파견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업무수행 과정**: 현대차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특히,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은 물론, 그 밖의 공정에서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고, 일부 공정의 경우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업무 내용 면에 있어서도 연속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작업결과가 혼합되어 누구의 작업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

③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생산 관련 시설 등은 대부분 현대차의 소유인 반면, 사내협력업체들은 고유 시설이나 자본 등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고, 현대차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등에서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원청회사와 사내협력회사 사이의 관계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력업체의 근로자는 원청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원청회사가 협력업체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 경우 원청회사가 고용간주나 고용의무의 대상이 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원청회사(현대차)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또는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심 단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그간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온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면, 상급심 법원에서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귀사에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다면 위 판례의 기준에 따라 다시 한 번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한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08	E-Mail. bhlee@shinkim.com
● 기영석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21	E-Mail. ysgj@shinkim.com
● 김동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1646	E-Mail. dwokim@shinkim.com
● 김종수 변호사	TEL. 02 316 1678	E-Mail. jsokim@shinkim.com
● 김종현 변호사	TEL. 02 316 1721	E-Mail. johkim@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